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83
----------	------

2025년 3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최윤희 의원(찬성자 10명)
나. 제안일 : 2025년 2월 3일
다. 회부일 : 2025년 2월 6일
라. 상정일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3월 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윤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는 자치구 간 협력 증진과 서울시 주요 정책의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과도한 경쟁 유발, 평가 기준의 모호성,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다만, 조례 폐지 시 자치구 간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과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필요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 방식 및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이에 시행계획 수립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공동협력 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행계획 수립을 필요 시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5조제1항)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출 기한 변경(안 제5조제3항)
-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고 위원 임기 규정을 '심의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방식에서 '즉시 차등 지원' 표현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2. 11. ~ 2. 15.)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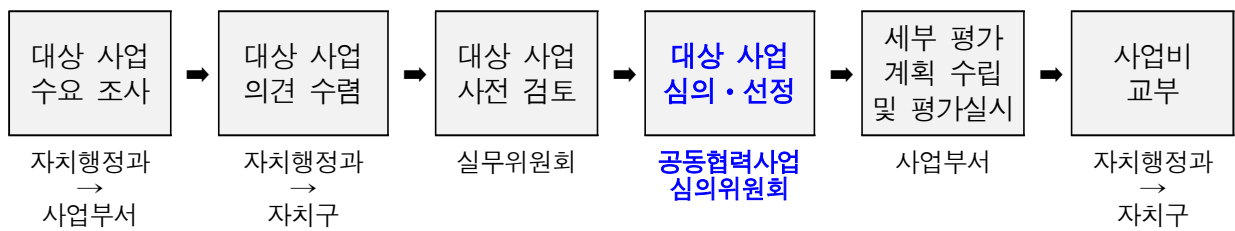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운영 방식 및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필요시 탄력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안 제5조),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며(안 제6조), 사업비 교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안 제8조) 방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과 시정 역점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구에 예산(인센티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매년 시장방침에 따라 시행되어 오다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임.
- ※ 경쟁을 나타내는 '인센티브'대신 상생을 의미하는 '공동협력'으로 조례명(사업명) 및 본문 내용을 변경, 외래어를 순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2017.4.28)한 바 있음.

[추진경과]

- '99년 ~ '08년 : 자체 계획으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운영
- '09년 ~ '16년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제정·운영
- '17년 ~ '20년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개정·운영
 - 경쟁을 나타내는 '인센티브' 대신 상생을 의미하는 '공동협력'으로 사업명 변경('17.5월 개정)
- '20년 ~ 현재 : 코로나19 관련 자치구 업무 과중 고려하여 사업 중단

〔 사업개요 〕

- 사업명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추진내용 :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
- 추진방법 :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 차등 지원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인센티브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자치구 간 출혈 경쟁 심화와 줄세우기라는 부작용 발생,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증가 문제 등으로 인해 2020년 10월 동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임종국 의원 외 30명)되었으나 임기말 폐기된 바 있음.
- 본 개정안은 시행계획 수립의 탄력성 제고,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예산집행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의 탄력적 수립,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방식 유연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여, 운영방식 및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원안 동의).

나. 세부 내용 검토

1) 시행계획 수립의 탄력적 운용(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을 필요시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출 기한을 변경하여 시행계획 수립 관련 업무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u>매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 <u>서울특별시</u> <u>시</u> ----- ----- ----- <u>수립·시행할 수 있다.</u>
② 시장은 <u>매년 시행계획</u> 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협력사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u>시행계획</u> ----- ----- -----.
③ 시장은 <u>제1항의 해당연도의 시행계획과 제2항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u> 하여야 한다.	③ ----- <u>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u> ----- -----.

- 최근 10년간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 12개 사업 추진을 끝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2020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바, 시·자치구간 협력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한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p>1. ~ 5. (생략)</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u>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u></p> <p>2. 3. (생략)</p> <p><u>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u></p> <p>⑤·⑥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u>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u></p> <p>2. 3. (현행과 같음)</p> <p><u>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u></p> <p>⑤·⑥ (현행과 같음)</p>
---	---

○ 심의위원회는 현행 규정상 상설 위원회이나, 공동협력사업 중단에 따라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미구성 상태로,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규정 미준수 상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위원회 미구성 사유로, 코로나19 확산('20년)으로 인한 자치구 업무 과중으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 중단됨에('21년)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화'(목적·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대상) 정비대상 위원회로 지정되었음.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제6조(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제7조(사업의 선정·평가 등)
- 기능 : 시·자치구 공동협력 대상사업 심의·선정
-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
 -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 위원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시 3급 이상 공무원,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유형 : 상설('10년 신설, 강행)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 위촉직 위원 11명 전원 임기 만료(' 22. 6. 30.)에 따라 위원회 미구성

○ **최근 5년간(2016~2020) 개최 현황** ※ ' 21년 이후 위원회 미개최

개최연도	개최일자	심의내용	심의방식
2016	2. 7.(수)	공동협력 신청사업 평가지표 검토 및 최종선정	대면심의
2017	3. 7.(화)		대면심의
2018	4. 3.(화)		대면심의
2019	3. 6.(수)		대면심의
2020	5. 8. ~ 5. 11.		서면심의

3)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방식 조정(안 제8조)

- 안 제8조는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방식을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공동협력사업비의 교부) ① 시장은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사업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u>즉시 차등 지원</u>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협력사업비의 교부) ① ----- ----- ----- <u>지원</u> -----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	② -----

<p>되는 <u>공동협력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u></p> <p>③ (생략)</p>	<p>--- <u>공동협력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u>-----</p> <p>-----.</p> <p>③ (현행과 같음)</p>
---	--

- 다만, 탄력적인 예산 운용의 범위를 넘어서 자의적이고 시혜적인 사업비 교부로 인한 방만한 예산 운용이 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한 세부 교부 기준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를 근거 법령으로 제정·운용하고 있고,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탄력적 예산 운영’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내지 ‘시장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법령의 취지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8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최유희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철,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박 석, 서호연,
이상욱, 이종환, 최민규,
홍국표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는 자치구 간 협력 증진과 서울시 주요 정책의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과도한 경쟁 유발, 평가 기준의 모호성,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다만, 조례 폐지 시 자치구 간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과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필요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 방식 및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이에 시행계획 수립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행계획 수립을 필요 시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5조제1항)
- 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출 기한 변경(안 제5조제3항)
- 다.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고 위원 임기 규정을 '심의 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라.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방식에서 '즉시 차등 지원' 표현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를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매년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해당연도의 시행계획과 제2항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을 1월말까지”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즉시 차등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협력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공동

협력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동협력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자치구 간 협력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는 「지방재정법」 제5조----- ----- ----- ----- ----- ----- ----- ----- ----- ----- -----</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u>매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시행계획</u>(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시행</u>하여야 한다.</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 <u>서울특별시</u> <u>시</u> ----- ----- ----- <u>수립·시행</u>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u>매년 시행계획</u>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협력사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 <u>시행계획</u>----- ----- ----- -----</p>
<p>③ 시장은 <u>제1항의 해당연도의 시행계획</u>과 <u>제2항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u>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p>	<p>③ ----- <u>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u>를 완료한 날로부터</p>

시장은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사업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즉시 차등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되는 공동협력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생략)

----- 지원-----
-----.

② -----
---- 공동협력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변화(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를 검토¹⁾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의 및 각종 정보확인 결과 별다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연간 정례적 운영비 소요 → 안전량에 따른 운영비 소요] 서울시 관련부서(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의결과 최근 3년간 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어 향후 안전 발생 빈도가 지금과 같은 추이일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향후 공동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관련 안전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안전 증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가 없어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연1회정도 개최된 바 있으며 예외적으로 안전이 많은 경우 2회 개최한 경우가 있음